

산업체위탁교육 계약서

대덕대학교와 [이하 “산업체”라 한다]은(는) 고등교육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의 산업체위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사항을 약정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계약의 목적은 산업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대덕 대학교에 위탁함에 따른 필요사항을 약정하는데 있다.

제2조(위탁 교육의 과정과 분야별 인원) ① 위탁교육의 과정은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대학 과정으로 한다.
② 위탁단위별 위탁생 수는 다음과 같다.

학과	위탁생수	비고

제3조(위탁생의 자격) 현재 산업체에 재직하고 있으면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한다.

제4조(위탁생의 선발과 입학) ① 위탁의 대상자는 재직 산업체에서 추천한다.
② 대학은 위탁생으로 추천된 자에 대하여 입학 전형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.
③ 위탁생의 추천 및 입학 전형 등 입학 허가 기준과 절차는 산업체(기관) 또는 대학의 장이 정한다.

제5조(교육과정의 편성) ① 본 계약에 의거 위탁생을 별도의 학급으로 편성할 경우에는 산업체와 대학이 공동으로 별도의 교육 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.
② 별도 교육과정을 편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학의 학칙에 따른다.

제6조(산업체의 시설 사용) 약정에 의거 대학이 산업체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.

제7조(산업체 임직원의 교수요원 활동) 위탁 산업체의 임직원 중 교수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겸임교수 또는 시간강사로 위촉(임명)할 수 있다.

제8조(교육비 및 등록) 위탁생의 교육비 납부액은 대학의 학생 납입금 수준으로 하되, 산업체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.

제9조(위탁생의 신분) 본 약정에 의거 입학이 허가된 위탁생은 대덕대학교의 학생 신분을 갖게 되며, 학칙의 적용을 받는다.

제10조(위탁교육 협력위원회) 약정에 의거 위탁교육협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, 구성 시 그 조직과 구성, 기능에 대해 별도로 정한다.

제11조(제적처리) ① 위탁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해당 산업체를 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제적 처리 되는데,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이직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만 제적처리를 면할 수 있다.

② 위탁생이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 타 산업체 이직 시 대학 내 「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」의 심의를 거쳐 학업을 유지할 수 있다.

③ 산업체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퇴직한 경우, 대학 내 「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」의 심의를 거쳐 학업유지가 가능하다.

④ 대학-산업체간의 협약으로 입학한 특성화고 · 마이스터고 졸업자, 일반고 졸업생 중 위탁직업교육과정 이수자, 초 · 중등 교육법 제2조 5호, 제60조에 의한 각종학교 중 고등학교 졸업 학력인정 전문계고 이수자('22.2월 졸업예정자 포함)는 산업체에서 6개월간 의무적으로 재직하여야 한다.

제12조(기타) 본 계약서 이외의 사항은 대덕대학교의 학칙과 관례에 준한다.

위와 같이 교육계약을 의뢰합니다.

20 년 월 일

주 소 :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68

기관명 : 대 덕 대 학 교

대표자 : 총장



주 소 :

산업체 :

대표자 :

(인)